임의계속 [] 가입 신청서

※ 유의	1사항 및	작성방법은	뒤쪽을	참고하시기	바라며,	바탕색이	어두운	난은	신청인이	적지	않습니디	ŀ.
------	-------	-------	-----	-------	------	------	-----	----	------	----	------	----

(아쪼)

지스비스	1001	그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	N	, = == ===	.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-17171	71	(앞4	<u>ት)</u>		
접수번호		접수열			처리기	간	즉시				
	① 성명			② 주민등	②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						
가입자	③ 주소										
	④ 전회	번호		휴대전화	휴대전화 FA			AX번호			
퇴직	⑤ 명칭								_		
사업장 (기관)	⑥ 재직	기간			~			(개월	∄)		
			⑨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· 국내거소신고번호)	⑩ 장애인·		⑪ 외국인					
	① 관	계 ⑧ 성명		종류 부호	등록일	국적	체류자	격 체류기긴	<u> </u>		
피부양자											
보험료	금융기	관명		계좌번호					=		
포함표 자동이체신청 [] 자동이		5 성명		예금주 주민등록	계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						
계좌 [] 환급계3	이체 :	희망일	□ 매월	일 □ 말일							
() []	※ 환	※ 환급계좌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계좌만 신청가능하며, 가입자가 탈퇴되면 환급계좌도 직권 해지됩니다.									
		전자우편(전자우	<u> </u>)						
전자고지		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(휴대전)						
신청			· 인전자문서중계자 등:)					
	수신지	나 성명		수신자 주	수신자 주민등록번호						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1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계속								의계속 가입	_ 입		
(탈퇴)을 신청하고,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											
		:으면 직상가 '인합니다.	입사의 사격을 뉴시	하시 못하고	되식안 날의	4 나음 날	[무터 소	급하여 시역	석		
						년	월 일	₫			
			닌청인				(서명 또는 인	!)			
국민건강보	험공단 (기사장 귀하									

1.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·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 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수수료 없음

3.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. 재외국민: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

나.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 사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증 사본(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또는 국내거 소신고사실증명(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 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

유의사항

- 1.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통산 1년(365일)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.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이 재취업한 경우에는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(재취업하고 퇴직한 날)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.
- 2.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 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3. 사용관계가 끝난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입니다.
- 4. 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5.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.
- 6.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.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(☎ 1577-1000), 홈페이지(www.nhis.or.kr),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.
- 7. 전자고지 신청의 경우,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신청 당월부터 적용되며, 신청인의 자격 변동 시 자동 해지 처리됩니다.
- 8. 임의계속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시 평생(전화)계좌. 법인계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9.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.

작성 방법

-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" []가입"에, 탈퇴인 경우 " []탈퇴"에 "∨"표시합니다.
- ① ~ ④: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(퇴직)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- ⑤ ⑥: 퇴직 당시의 사업장(기관)의 명칭 및 재직기간을 적습니다.
- ⑦ ~ ⑪: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. 다만, 임의계속탈퇴 신청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.
- ⑦: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.

첨부서류

(임의계속

가입의

경우만

제출)

- ※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·손녀 이하, 형제자매, 처부모, 시부모, 사위·며느리, 증조부모, 계자, 생자녀, 생부모, 시조부모, 처조부모, 손녀사위, 손자며느리 등
- ⑧・⑨: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를 적습니다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).
- ⑩: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(6・18자유상이자 포함)인 경우 장애인・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.
 - ※ 장애인・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:

지체장애인<1>, 뇌병변장애인<2>, 시각장애인<3>, 청각장애인<4>, 언어장애인<5>, 지적장애인<6>, 자폐성장애인<7>, 정신장애인<8>, 신장장애인<9>, 심장장애인<10>, 호흡기장애인<11>, 간장애인<12>, 안면장애인<13>, 장루・요루장애인<14>, 뇌전증장애인<15> 국가유공자 등<19>

(1):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, 체류자격(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), 체류기간(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)을 적습니다. ※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O(유학생의 경우에는 C9), 국적은 이주국기명을 적고,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.

